



2001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 (한국편)

미 무역대표부

2000년 봄에 한국은 스페셜 301조의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부적절한 IPR 집행, 임상의약실험 데이터의 보호 결여, 종전 저작물과 의약품 특허에 대한 완전한 소급적 보호의 결여, 한국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의약품의 시장 승인에 대한 한국의 보건 당국과 지재권 당국간의 협력 결여, 소비제의 지속적인 위조행위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계속된 결과였다.

2001년 1월, 한국 정부는 침해에 대한 형벌을 5년의 징역 및 5천만원의 벌금에서 7년의 징역 및 1억원의 벌금으로 증가시킨 특허법,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개정은 또한 일반적으로 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허법은 특허 출원 절차를 강화하고 효율화하였다. 개정은 또한 한국 특허청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교환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2000년에, 한국 특허청은 또한 심사관 수를 늘렸으며, 따라서 심사와 등록 기간을 실질적으로 1,2년에서 10개월로 단축시켰다. 전반적으로, 특허법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대부분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산업계는 여전히 청구범위 해석과 휴면 특허 및 종속 특허의 처리에 있어서 결점이 남아 있다고 믿고 있다.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한국은 2002년에 회원국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와 상표법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상표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은 또한 국제 출원에 대한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등록인을 위한 소급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제적 유명 의장에 대해

서는 무심사등록을 허용하게 되었다.

2000년 12월에, 한국 국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CPPA)에 대한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decompilation과 circumvention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다루었기는 하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ies)”와 집행관련 법률과 같은 CPPA의 다른 문제들을 다루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와 다른 제품에 대한 한국의 불법복제 행위 단속의 일관성, 투명성, 그리고 효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2000년 7월, 한국은 개정된 저작권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에서의 복사 문제를 포함한 법률에 관한 우려가 계속 남아 있다. 한국은 또한 여전히 WTO/TRIPs 협정하에서 요구되어진 기존 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소급적 보호(작자 생존기간과 생후 50년 혹은 발표 후 50년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출판업자들은 한국에서 서적의 불법복제가 횡행되고 있다는 범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저작권법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적 출판업자들이 직면한 상황은 지난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산업계에 따르면, 2000년에 한국시장에서 서적 불법복제에 의해 피해를 본 미국 출판업자의 손실액은 총 3천9백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1995년에 비해 56% 증가한 수치이다. 산업계는 또한 대량 불법복제가 교수와 학생들 다 같이 이용하는 소규모 복사점을 통하여 전국의 대학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억제적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 서적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개선하라고 한국에 촉구할 것이다.

불공정 경쟁과 영업비밀에 대한 한국 법률은 한국에서의 영업비밀을 어느정도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 특히 화학약품, 사탕 제조업자들은 등록 혹은 허가 절차로 제조공식 혹은 청사진과 같은 매우 자세한 제품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정부 규정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미국 기업들에 의하면 기업의 기밀 정보의 누설은 한국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출된 정보는 한국 공무원들이 충분히 보호를 못하고 있다고 하며, 어떤 경우에는 한국 경쟁자들에게 흘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의약품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혹은 특허 보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 및 안전 담당 기관(식품안전청)과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특허청)의 공무원간의 조정이 결여되어 혼존하는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 허가를 부여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 TRIPS 협정 제39조 3항에서 요구되어진 시장 진입 허가를 얻기 위해서 제출된 실험 데이터에 대한 불공정 상업적 사용에 대항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전정, 한국은 한국 법 체계에서 그러한 보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다.

상표법은 심사관들이 “신의에 반하여 (in bad faith)” 이루어진 등록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없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 상표를 취소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따라야 할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분명히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침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법적 구제를 추구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으로써, “휴면(sleeper)” 상표 등록에 대해서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2000년 1월에, 자사의 브랜드가 한국 기업에 의해서 몰래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수십개의 밀감류 포장업체들에게 있어서 상표 침해는 주요 문제가 되었다. 미국 상표권자에 의한 밀감류 배포를 막기 위해서 한국 기업은 자사의 상표 등록권에 호소하였다. 한국 특허청은 법적 구제는 한국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면서 개입하기를 거절하였다.

한국은 오랫동안 침해상품 수출의 원천지였다. 직물 의장은 일반적으로 한국 저작권법이 아니라 의장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에 직물 의장에 대한 부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졌다. 보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점이 남아 있고, 몇몇 한국 기업은 미국 저작권적 보호를 받는 직물 의장을 불법복제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여 미국산 진정상품과 경쟁하고 있다.

2001년 2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통신부와 법무부에 저작권 집행 노력을 강화하도록 명령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체제를 명시적으로 연계시켰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고무되어 지속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의 집행이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다.

약품에 관한 WTO, WHO 공동 워크샵

WTO

2001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노르웨이의 호스보르(Høsbjør)에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21개국 80여명의 전문가가 모인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노르웨이 외무부, 보건 분야의 광범위한 회원을 가진 미국 기구인 지구보건이사회(Global Health Council)의 공동으로 조직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생명을 건지는 의약품을 가난한 국가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 보건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구매력에 따라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차별가격(differential pricing)이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필수 의약품 및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저임금 국가에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의약품 구입 및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하였다. HIV/AIDS, 말라리아, 결핵이 가장 중요 문제로 논의되었으나, 가난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분야의 질병도 또한 언급되었다.

몇몇 WTO 비판가들은 TRIPs 협정이 이러한 공공 보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TRIPs 협정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가난한 국가들에게 엄청난 가격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가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약의 연구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특허 제도의 고유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WTO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WTO 지식재산권국의 아드리안 오톤(Adrian Otten) 국장은 “이번 워크샵의 참가자들은 다른 시각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특히 최빈국에 있어서 구입가능할 정도의 가격으로 협조하는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차별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 반면, 신약의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특허제도가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특히マイ크 무어(Mike Moore) WTO 사무총장은 2001년 2월 22일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에서의 기고에서 의약품 관련 WTO/TRIPs 협정의 역할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TRIPs 협정 조문에 나타난 있는 특허권에 대한 특정 제한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였다.

즉, “TRIPs 협정은 필수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약품을 구입 가능한 가격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단기간의 필요성과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한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장기간의 필요성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TRIPs 협정은 또한 특허권에 대한 특정 제한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제한으로는 발명의 공개, 강제실시권, 일반 제약회사의 특허 의약품 조기 이용, WTO 분쟁해결 기구에 의약품 관련 병행수입 제소 불가 등이 있다.”

한편, WTO 사무국의 자야쉬리 워털(Jayashree Watal) 고문은 최빈국의 공공 보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의 하나인 이번 워크샵에서 거론된 제안으로서 의약품의 차별가격을 실시할 경우 지식재산권 특허 특허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으로 강제실시권과 병행수입을 들었다. 워털 고문은 강제실시권을 포함한 실시권의 허여를 지리적으로 제한하고 병행수입에 있어서도 제한을 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와 가능성에 있어서 WTO의 TRIPS 이사회는 지식재산권과 약품에 대한 접근에 대한 특별 회의를 6월에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2차 WIPO 인터넷 도메인 이름 프로세스 중간 보고서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4월 12일 제2차 WIPO 인터넷 도메인 이름 프로세스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는 이에 대한 인터넷 관련 업계의 일반인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번 중간 보고서는 인터넷에서의 도메인 이름의 남용적인 등록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일련의 권고안을 담은 것으로 2001년 4월과 5월에 걸친 일련의 지역 협의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 이후 최종 보고서는 2001년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2001년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부유럽)

2001년 4월 26일 가나 아카라(아프리카)

2001년 5월 1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미)

2001년 5월 24일 호주 멜버른 (아시아 태평양)

2001년 5월 29일 미국 워싱턴 D.C. (중북미)

2001년 5월 30일 스페인 발렌시아 (남유럽)

이번 제2차 WIPO 인터넷 도메인 이름 프로세스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템에서의 특정 확인자(identifier)의 남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2000년 7월에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제1차 인터넷 도메인 이름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상표 혹은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도메인 이름의 남용적인 등록(사이버 무단점거 - cyber-squatting)을 다루기 위한 권고안을 담은 제1차 보고서가 1999년 4월에 발표되었다.

제2차 WIPO 인터넷 도메인 이름 프로세스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계로, WIPO는 제2차 프로세스에서 다루어질 문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절차와 일정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0일 대중 의견 요청서(WIPO2 RFC-1)를 발행하였다.

2단계는 제1차 의견 요청서(WIPO2 RFC-1)에서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 이후에 결정된 문제의 실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13일에 제2차 대중 의견 요청서(WIPO2 RFC-2)를 발행하였다. 제2차 프로세스의 3단계인 이번의 중간 보고서는 권고안의 초안을 담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제3차 대중 의견 요청서(WIPO2 RFC-3)가 발행되었다.

이번 중간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대한 개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제상 및 가상의 확인자

제2차 WIPO 프로세스 : 도메인 이름과 다른 확인자

제2차 WIPO 프로세스 위임명령

권고안 작성에서의 원칙 지침

현재 보고서의 중간적인 성격

장래 권고안에 대한 이행

2. 의약 물질에 대한 국제 비소유적 이름 (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

INN 제도

INN의 선택

INN 제도 기저에 있는 정책

INN과 상표권

결정에 대한 문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에 대항하여 INN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부여된 보호의 범위

도메인 이름 체제에서 INN 보호의 이행을 위한 정책 수단

3. 국제 정부간 기구 이름과 도메인 이름 제도 (DNS)에서의 보호

국제 정부간 기구 이름과 약자(IGO)에 대한 국제적 보호

국제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를 위해 남겨둔 .int 티플레벨 도메인

남용에 대한 의견, 성질 및 범위에 대한 검토

이름과 IGO 약자의 보호에 대한 대안

ccTLDs의 적용여부

4. 개인 이름

이름에 속하는 것 : 개인 이름과 기술

개인 이름의 국제적 보호 대두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개인 이름과 DNS의 대두 : .name 티플레벨 도메인의 제안

5. 지리적 표시, 원천 표시 및 지리적 용어

지식재산권 제도에 의해 승인된 지리적 명칭 (designation)

전문용어, 목적 및 법적 구조

개방 gTLD에서 원천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바람직성

개방 gTLD에서 지리적 표시와 원천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외 사용

UDRP의 가능한 수정

ccLTD에서 지리적 표시와 원천 표시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넘어선 지리적 명칭

도메인 이름으로서의 지리적 용어의 등록 예

도메인 이름의 남용적 등록에 대항하여 지리적 용어의 보호에 관련된 일반적 고려 사항

gTLD에서 ISO 3166 코드 요소의 보호

gTLD에서 국가 내에서 국가 이름과 장소 이름의 보호

개선시켜주며 우리의 환경을 풍요롭게, 또 아름답게 해주는 발명과 디자인과 예술적인 창작물들을, 우리를 잉크통에서 인터넷(from the inkwell to the internet)으로 땅의 길에서 우주의 길(from railways to rocket)로 이끌어 내준 창조와 발명을 한 이들에서 빛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맞이하는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에 우리가 진보하도록 힘을 주고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힘의 주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창조의 보편적 문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모든 국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협력하도록 고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그들의 노고의 결과물을 모든 나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옳게 사용되도록 보장함을 서약하는 바입니다.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WIPO

2001년 4월 26일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이다. 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의 향상에 있어 창조와 개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0년도 9월에 있었던 연례모임에서 WIPO 가맹국들은 WIPO설립조약이 발효된 4월 26일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활용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활동을 위한 날로 정하게 되었다.

이 날에 즈음하여, WIPO에서는 다음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Creating the Future Today (미래를 창조하는 오늘)” - 2001년 4월 26일 첫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 주제의 영문 네 단어는 모든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혁신가들과 예술가들의 중요성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여건을

WIPO 사무총장인 카밀 아드리스 박사(Dr. Kamil Idris)는 과거와 현재의 사회의 발명가들과 창작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번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에 우리의 세상을 보다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있어서의 발명가들과 창작자들의 공헌을 인정하는데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모두는 그들의 이이디어과 상상과 능력과 노고의 열매들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공헌과 인내에 경의를 표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발명가들을 격려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WIPO에서는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전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현상 논문을 모집했고 또한 가맹국들에서 “생활 속의 발명(At home with Invention)”이란 주제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각 국에 배포된 CDROM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의 모습을 단순한 한 가정의 예를 들어 보여주는 내용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의 진작을 위한 세계각국의 포스터 등을 담고 있다.

한국, 한·중·일 특허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3국 특허청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 본격화

한국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중·일, 3국 특허청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안을 일·중 양국에 제시함으로써 3국 특허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 한국특허청은 한·중·일, 3국 특허청간의 특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국과 일본에 제시하였음.
- 이는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이 지난해 10월의 한·중 특허청장회의와 11월의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제기한 3국간 지재권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최근 중국과 일본의 특허청장이 3국간 특허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특허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한 것임.
- 이에 앞서 임 청장은 2000. 9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재권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특허행정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 3국 협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역사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3국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이에 대하여 그동안 다소 소극적 입장은 견지하던 일·중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함으로서, 한·중·일 3국 특허청장은 오는 9월, 일본에서 최초로 3국 특허청장이 모두 참석하는 모임을 갖고 3국간 특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키로 합의하게 된 것임.
- 한국특허청이 제시한 3국간 특허협력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우선 3국 특허청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국 특허심사관들의 교

류를 활발히 하고 3국이 공동으로 각종 지재권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특허의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인정하는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특정기술분야에서의 시범적인 공동심사 실시, 3국 통합기술동의어 사전 구축 및 특허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 3국간 특허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허제도와 심사실무를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등 국제무대에서 3국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3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3국 특허청간의 특허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경우 한·중·일 3국은 특허의 출원·심사·등록절차에 있어서의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임.
- 더구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면에서 이들 세나라는 모두 세계 5위안에 드는 출원대국임을 감안한다면 3국간 특허협력관계 구축은 이들 3국 특허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한·중·일 3국 특허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 경과

1. 논의 경위

가. 2000년 WIPO 총회에서의 제의

- 임내규 특허청장은 2000. 9. 25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차 WIPO 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지재권 행정의 궁극적 방향으로 제시



« 기조연설중 관련부문 주요내용 »

- 특허행정의 2가지 목표
 - 심사의 질 제고 및 심사기간의 단축
- 이를 위해 심사관 증원 노력 경주
 - 그러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또 다른 목표와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궁극적 해결책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
 - IPR 분야에서는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통해 심사의 부담을 절감하는 것임

- 이에 대해 각국 특허청 대표들은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였음.

나. 한·중 특허청장 회의시 제안 내용

- 임내규 특허청장은 2000. 10. 25 중국에서 개최된 제7차 한·중 특허청장 회의시 『한·중·일 3국 특허협력』을 제의
 - 이는 9월 WIPO 총회시 기조연설에서 천명한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전제로
 -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이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이에 대해 당시 중국특허청의 Jiang Ying 청장은 훌륭한 제안으로서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는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이를 제기한 한국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 Ma 차장은 적극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음.

다. 한·일 특허청장 회의시 제안 내용

- 임내규 특허청장은 2000. 11. 22 한국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시 일본측에 대

- 하여 『한·중·일 3국 특허협력』을 제의
 - 즉, 현재 개최되고 있는 양자회의와는 별도로 3국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재권 제도의 통일화”,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
 - 이에 대해 오이가와 일본 특허청장은
 - 처음에는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는 관계로 의견표명을 할 수 없다는 다소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 그 필요성에 대한 임 청장의 설득으로 3국간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키로 하는 한편,
 - 이 제안의 주도국인 한국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 제시키로 합의

2. 추진 현황

- 그간 다소 수동적 자세를 보이던 일·중 양국은 『3국 협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자세로 전환
 - 이는 그동안의 내부의견 검토를 걸쳐 우리가 제시한 『3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인식한데 연유하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일본은 9. 12~13 일본 동경에서 개최예정인 WIPO 아시아지역 포럼을 계기로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3국 협력』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하였고, 우리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 한국특허청은 작년 한·중·한·일 특허청장 회의 이후 우리가 제의한 『3국 협력』의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수립하여
 - 이를 일·중 양국에 제시하였고
 - 제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열리는 9월 이전까지 실무차원에서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한국특허청이 제시한 3국간 특허협력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우선 3국 특허청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국 특허심사관들의 교류

를 활발히 하고 3국이 공동으로 각종 지재권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특허의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인정하는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특정기술분야에서의 시범적인 공동심사 실시, 3국 통합기술동의어 사전 구축 및 특허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 3국간 특허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허제도와 심사실무를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등 국제무대에서 3국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3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3국 특허청간의 특허협력관계가 구축되는 경우 한·중·일 3국은 특허의 출원·심사·등록절차에 있어서의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임.
- 더구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면에서 이들 세나라는 모두 세계5위안에 드는 출원대국임을 감안한다면 3국간 특허협력관계 구축은 이들 3국 특허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美, 한국 知財權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저작 및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키고 현대전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경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슈퍼 301조’ 연례 통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정부조달과 보조금 지급 등 3개 부문을 포함한 보고서에서 또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불공정 관행’들을 지적하면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및 국제 통상법규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

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졸리 미 무역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민을 위해 무역 협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고서에 담았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이 협정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해 필요할 경우 강제 집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정부가 “미국 및 국제 통상법규를 통해 전권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USTR 관리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협상과 함께 새로운 쟁의 및 다자간 협상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작 및 특허권 부문에서 한국, 인도, 필리핀, 대만, 러시아 및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5개국과 EU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것은 협상을 통해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다.

또 32개국에 대해서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해당국 관련법규 등을 검토키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조금 부문에서는 EU의 에어버스 지원과 한국 정부의 현대전자 ‘지원’,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무역 관행이 특히 지적됐다.

정부 조달의 경우 일본, 대만, 캐나다, EU 및 독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슈퍼 301조 보고서는 미국차 수입 규제에서부터 농업무역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불만 사항들을 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 SW 불법복제 강력 경고

미국 정부는 한국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계속 할 경우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한국을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와 관련한 ‘우선 감시대상국(PWL)’에 포함시켰다. 지적재산권우선감시대상국



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인도 대만 러시아 등 14개국과 유럽연합으로, 협상을 통해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또 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례 세계 테러보고서를 발표, 북한을 비롯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올해로 14년째로 북한은 지난 87년 김현희(金賢姪) 등 북측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 기 폭파사건직후인 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됐다.

출처 매일경제

국내 무선인터넷 특허출원, BM 분야 80% 차우쳐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선인터넷 관련 특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과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서 출원된 무선인터넷 관련 특허는 총 155건으로 일본 235건, 미국(2000년 10월 말 현재) 232건, 국제특허출원(PCT) 245건에 비해 전수면에서 80~90건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서 특허출원된 것은 80% 이상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등 아이디어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BM)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6건(16.8%)에 불과해 내용면에서도 크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미국과 PCT의 경우 네트워크, 모바일 IP, 보안 등 기술 관련 특허가 각각 60%와 71%를 차지해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막대한 로열티 지급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출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BM특허와 달리 핵심기술 관련 특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기술종속이 우려될 뿐 아니라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막대한 로열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이 출원한 BM특허의 경우 대부분 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업체간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확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업체들의 특허공세에 대비, 특허맵 작성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의 공백기술을 찾아 특허권리를 획득하고, 향후 특허 보유업체와 특허기술을 상호 맞교환해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싱을 활용하는 등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국내 기술이 외국에 비해 앞서 있으므로 공백기술을 찾아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국내 무선인터넷 특허 가운데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출원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 98년 이후 심사중인 미공개 외국인 출원건수가 많아 곧 외국인 특허 공개가 본격화할 경우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국내 무선인터넷 업계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PCT 출원 후 한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러 곧 PCT를 통한 한국 출원도 대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특허제도 국제적 통일 가시화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특허 실체 사항의 통일화를 규정하는 특허실체법조약(SPLT) 초안이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에 의해 제시됐으며, 지난 12일부터 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IPO 특허법 상설 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이 초안의 내용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번에 논의될 특허 실체 사항은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요건, 즉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외에 출원 서류의 기재가 적합된지를 판단하는 지재 요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특허 요건 등 실체 사항을 포함한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2~3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특허 절차 사항을 통일화하는 특허법 조약(PLT)이 채택된 데다 이번에 실체 사항에 관한 통일이 이뤄지면 별명자들은 국내외에서 낮은 비용으로 더욱 신속하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실체 사항이 통일되면 출원인의 편의는 물론 각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가 같아지고 다른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특허청의 심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선진국 전매특허 로열티 “이젠 우리몫 찾자”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로열티 벌어들 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 미국 등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하거나 무단 사용하다 소송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한국 산업체로서는 반대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자면 기술수출 총액은 여전히 수입총액의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이처럼 결실을 맺을 경우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제는 소송의 주체 =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LG전자.

LG전자는 최근 대만의 퀸타 컴팔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해주는 ‘정보전달 통로규격(PCI버스)’ 등 컴퓨터 관련 특허를 LG의 허락도 없이 썼기 때문.

LG는 이미 같은 특허에 대해 지난해 8월 미국 인텔사와 로열티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대만 등의 다른 5개 회사와도 소송을 진행중이다.

LG는 세계 주요 60여개 컴퓨터회사와 특허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모두 자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LG전자의 예상 연간 로열티는 2억~3억 달러.

LG는 또 미국에 있는 자회사 제니스가 원천특허를 갖고 있는 디지털TV 전송기술(VSB)이 미국 디지털TV의 전송방식 표준으로 채택돼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필립스LCD도 일본 NEC사와 초박막트랜지스터액정표시장치(TFT-LCD)의 구동칩에 관한 특허 문제로 소송까지 벌였으나 지난달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도 차세대 고속D램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램버스사와 특허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 기술 수출사례 는다=삼성중공업은 최근 한국 조선산업 최초로 조선기술을 미국에 수출했다.

종근당은 차세대 항암제 ‘CKD602’의 원천기술을 미국 알자사에 넘기고 기술이전료 3000만 달러를 받았다.

추가로 로열티로 매출액의 5%를 받는다.

삼양사도 지난해 미국의 세계적인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BMS)사에 3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을 수출했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 특허청으로부터



1442건의 특허등록을 인정받았으며 반도체로 열티 수입만 1500만달러 이상이다.

함수영 LG전자 특허담당 상무는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등지로 가서 구걸하다시피 기술을 들여왔는데 이제 일부 부문에서는 입장이 거꾸로 됐다”며 “우리 기업들도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기술에 승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한국 “불법복제왕국” 아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90% 이상이 아니라 10%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정통부, 행자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9.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일제 단속에 따른 정품 사용 급증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미국 등 일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60~90%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한국이 불필요하게 불법복제 왕국이라는 오명을 썼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검은 단속기간중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 사용 의심이 있는 총 2315개 업체 및 기관의 PC 9만9867 대를 점검, 모두 3만4181개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35만9090 개였으며 정품이 32만4909개였다.

대검은 특히 2315개 업체 및 기관 가운데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88개인 반면 복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무려 1024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검은 불법복제품 사용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정품구입 가격 1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복제품을 사용한 878개 업체를 입건했으며 비율은 37.9% 였

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단속 후 정품을 구입하거나 정품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건했더라도 별금액을 대폭 경감하는 등 관용조치를 베풀 계획이다.

대검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상시단속체제로 전환, 전국 21개 지검 지청에 설치된 지역 합동수사반에서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전자신문

신규 최상위 도메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신규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신규 최상위 도메인 시행사는 선접수 선등록에 의한 실시간 등록 전 지재권 소유자가 도메인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메인은 선접수 선등록 원칙으로 등록되고 있어 먼저 접수한 사람이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메인 정책 결정 기관인 ICANN (www.icann.org)은 닷컴 도메인 이 선접수 선등록 제로 운영되고 등록에 제약이 없는 특성 때문에 도메인 선점(스쿼팅)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신규 도메인은 이같은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재권 관련 절차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닷비즈(.biz) 도메인은 오는 21일부터 7주간 상표 서비스표, 사업자등록을 소유한 회사를 위한 지재권 등록 (Intellectual Property Claim)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후 6월말부터 시행하는 예약등록 기간 동안 해당 도메인을 타인이 신청 할 경우, 지재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해 도메인 스쿼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등록을 시작하는 닷인포(.info)의 경우,

시행전 1개월간 상표와 서비스표 소유자에 대해 우선 등록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는 지재권 소유자가 닷인포 도메인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도메인 등록회사 가비아의 원종홍 부장은 “신규최상위 도메인의 경우 지재권 보호가 강화된 만큼 국내 기업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출처 inews24

특허청, 중기 지재권 갖기 전폭 지원

특허청은 1건이상 특허·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를 올해말까지 1만5000여 개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첨단 핵심분야에 대한 특허지도를 작성·배포하고 있으며 1심사관 1기업 차매결연을 통해 지재권에 대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와 관련된 출원료, 신규 등록료 등을 감면해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99년 6월 현재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9만 449개 가운데 특허, 실용신안권 등 1건 이상 산업체권을 보유한 기업은 4081개로 4.42%에 불과했다. 보유건수는 8951건으로 중소제조업체의 특허, 실용신안권 보유비율은 전체 21만8253건 가운데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6748개 기업이 신규로 산업체권을 출원해 1건이상 산업체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1만개를 넘어섰다. 전년동기보다 114%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특허청이 주도가 돼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재권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기 시작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허청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발명의식 고취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 한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선도해 나갈 우수한 발명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의 1만500여 초·중·고교에 대해 발명반을 설치토록 권장해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1개교 1발명반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도교사용 학생발명 학습지도서를 매년 발간해 배포함은 물론 매년 1200명의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발명전시회에서 우수 학생을 배출한 발명반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금을 지급해 99년에는 총 182개교 발명반을 대상으로 1억8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도 210개교에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출처 매일경제

[인간배아 연구 제한] “난치병-불임치료 뒷걸음” 논란

발표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은 논란이 거듭돼 온 생명복제, 줄기세포, 생명특허 문제 등에 대해 국내 과학계와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합의한 최초의 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 등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주도해온 과학자들과 불임클리닉의 의사들, 그리고 특허청 등이 시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조항들을 짚어본다.

▽ 인간배아 복제 금지와 줄기세포 연구 제한=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든 분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능세포’다.

이 세포로 특정 세포나 조직을 만들어 당뇨병, 심장병, 치매 환자에게 이식하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어



현재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줄기세포를 얻어야 한다.

현재 방법은 4가지.

인공수정 뒤 남은 생배아를 이용하는 방법, 핵이 제거된 난자에 어른의 체세포핵을 이식한 후 자란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 불임클리닉에 냉동보관된 배아 가운데 폐기될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 사람의 몸에서 직접 줄기세포를 찾아내는 방법 등이다.

시안은 이 가운데 생배아와 인간배아 복제를 이용한 방법을 금지했다.

생배아와 인간배아를 생명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냉동배아법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성인의 골수 등에서 직접 줄기세포를 찾아내는 것은 허용했다.

시안에 따르면 지난해 인간배아 복제를 성공시킨 황 교수의 연구는 금지된다.

황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시킨 나라는 독일뿐”이라며 “이대로 법이 마련될 경우 한국불임학회, 빌생생물학회, 가축번식학회, 수정란이식학회 소속의 연구자들 수백 명이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종간 교집행위 금지=시안은 인간과 동물의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키는 등의 종간 교집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불임클리닉에서 남성 불임 치료를 위해 햄스터의 난자에 사람의 정자를 수정시키는 실험 등은 금지된다.

박세필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장은 “정자가 형태적으로는 정상이지만 수정이 잘 안될 때 정자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런 실험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유전자 치료 제한=시안은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세포질 이식 포함)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다른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유전

자를 지닌 아기 15명이 태어나 논란이 일었다.

국내 마리아불임클리닉에서도 같은 연구가 진행돼 3명의 여성이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치료는 금지된다.

▽ 생명특허 심사 이원화=시안의 특허 조항은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공학 특허의 허가 여부는 특허청의 요청에 의하여 신설될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청원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윤리적인 이유로 생명과학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특허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특허청→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까지 올라가는 현재의 항소 절차 외에 특허청→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새로운 항소절차를 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심사제도의 이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18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특허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생명특허 조항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입장문을 정리했다.

특허청 이성우 유전공학과장은 “이 시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식의 법안”이라며 “이 특허조항은 이제 막 짜트기 시작한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간배아-배아복제▼ 인간배아 =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14일까지의 초기 배아 상태와 함께 조직과 기관의 분화가 마무리되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사람의 경우 대체로 수정 이후 2개월 정도까지를 광의의 배아로 볼 수 있다.

▽ 태아 = 배아 이후 출생 전까지 성장 단계.

▽ 줄기세포 = 배아의 발달 과정 중 신체 각 기관

으로 분화하기 직전의 세포로 이를 이용해 신체의 특정 기관으로 분화시켜 난치병 치료에 활용 할 수 있다.

▽ 인간 복제와 배아 복제의 차이점=인간 복제는 체세포 핵이식 기술에 의해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배아 복제는 배아를 자궁에 착상하지 않고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에 배아간 세포를 얻거나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행위다.

출처 동아일보

“생명 특허 허용 결정 이원화 반대”...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회의(www.kbac.or.kr 위원장 진교훈)가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골격에 “법을 어겨 생산된 기술과 생산물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월권 행위라고 특허청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다시말해 특허를 줄지 여부는 모두 특허법에서 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새로 제정될 생명윤리기본법에서 규정을 따로 만들거나 이를 어길 경우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것은 특허법을 이원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배아복제에 대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허용 추세로 흐르고 또이들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술과 생산물이 국내 출원된다면 이것을 특허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시안관련한 공청회에서 배아복제를 둘러싼 과학자와 시민단체와 격돌외에도 생명 특허가 이해 당사자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생명특허에 관한 법의 골격은 이를 포함, 크게 3가지. 나머지는 생명과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여 여부는 물론 시민단체가 특허 무효를 청원할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칭)가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성우 특허청 생명공학과장은 “미국도 생명 특허의 심사와 관련해 특허청으로 일원화 하고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며 “특허법 이외에 제 3의 법으로 규정 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과장은 “만약 인간 복제와 관련해 생명윤리기본법에 원래 시안대로 제정된다면 법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특허법의 심사 기준을 새로 바꾸거나 고쳐 규정함으로써 생명 특허에 관한 법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 무효와 관련 법체계상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칭)가 시민단체의 청원에 의해 무효화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특허 기본 골격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이미 특허가 허용돼 권리로 보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무효 심판을 청구해 뒤집힐 경우가 빈발한다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사람이나 이를 믿고 기술과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의 입장에선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상장사 산업재산권 급증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무형자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연구개발(R&D)에 의한 산업재산권(특허권 및 실용실안권)이 127.54% 증가한 1조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미래 기업수익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을 포함한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474개사(금융업 제외)의 무형자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무형 자산은 99년말 9조3608억원



보다 9.14% 증가한 10조2166억원으로 집계 됐다.

무형자산 규모는 2000년 말 현재 총 자산 502조 6411억 원의 2.03%에 해당하며 99년에 비해 1.92% 늘어났다.

증권거래소는 10대그룹이 보유한 무형자산은 8조 1157억원으로 전체의 79.44%에 이르고 산업재산권도 전체의 88.92%인 1조73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기술개발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2000년말 현재 무형자산 보유 상위사를 보면 하이닉스 반도체가 3조12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대차 1조582억원, LG전자 1조925 억원, LG산전 4833억 원 순이었다.

10대그룹의 무형자산은 99년보다 16.89% 늘었으며 현대가 3조281 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와 현대차가 각각 1조7907억원과 1조7720억원이었다.

출처 문화일보

한편, PCT개혁안에 대해 WIPO회원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생명산업 육성 위해 관련 제도 정비 시급”

최근 정보기술(IT) 및 나노기술(NT) 산업과 함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복성해) 김승호 선임연구부장은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국가 생물산업 육성 전략 방안 도출을 위한 공청회’에서 ‘21세기 국가 생물산업 육성 전략’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관련 제도 미비가 생물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현재 국내의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대책 미비로 구상나무와 원추리 등 각종 자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토착생물종 등 유전자원을 국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특허기준의 국제적 조화가 중요한 만큼 유전자 특허의 적절한 보호기준 마련과 심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국내의 특허심사 역량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산·학·연 혁신 주체의 육성과 협력시스템 구축도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절실한 과제로 꼽힌다”며 “이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에 관련 학과 개설을 확대하고 관련 과목을 일반교양 필수로 이수토록 하는 등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바이오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바이오 분야의 자금난 및 인력난 해소

WIPO에 PCT 개혁안 전달

특허청(www.kipo.go.kr)은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특허청 등 특허협력조약(PCT) 주요회원국과 함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PCT개혁(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출한 개혁(안)은 모든 PCT국제출원시 전회원국을 출원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 ▲ 출원인의 거주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하며
- ▲ 복수의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기능을 통합해 동시에 수행하고
- ▲ 국내단계진입기간을 현재 30개월에서 부기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국제 바이오펀드’ 조성 ▲관련 벤처기업에 병역특례 전문 요원우선 배정 ▲ 해외 바이오벤처 유치센터 설립 ▲ 권역별 바이오밸리 조성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

이 밖에 김 부장은 “국내의 생물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가 선진국 1개 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관련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간유전자와 동·식물, 미생물, 해양생물, 바이오 기기 등 향후 유망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韓-中-日 특허협력 관계 논의

특허청(www.kipo.go.kr)은 오는 9월 일본에서 한·중·일 3국 특허청장이 모임을 갖고 3국간 특허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특정기술분야에서의 시범적인 공동심사실시, 3국 통합 기술동의어 사전 구축과 특허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특허청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같은 내용의 특허를 3개국에서 동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3국 특허청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남의 나라일 아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법원은 그동안 복잡하게 얹혀있던 옥스퍼드 진테크놀로지(OGT)가 개발한 DNA 마이크로어레이 특허기술에 대한 미국 애피메트릭스사의 실시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옥스퍼드대학의 자회사인 OGT사의 특허는 고체

표면에 핵산을 붙이는 일반적인 방법에 관한 것이고 애피메트릭스의 특허는 광식각기술에 의한 고밀도의 어레이를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OGT사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특허침해소송이 걸려 있지만 판결대로 라이센스가 유효하다면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물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지지를 받는다면 OGT사가 특허권 침해를 문제 삼아 애피메트릭스의 고밀도 유전자칩 생산 및 상용화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 판결이 이들 두 회사에게는 중요하겠지만 휴렛 패커드, 모토롤라, 후지쯔 등 후발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대체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D사가 국내에서 미국의 애피메트릭스와의 특허 계약을 맺고 각종 유전자 의 가능 연구용 DNA 칩을 양산해 본격적으로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매피메트릭스에서 출원한 광식각기술에 의한 고밀도 DNA 칩제조기술에 대한 기본특허 2건이 지난 1997년에 등록됐다.

최근 국내 몇몇 바이오 벤처들이 DNA 칩 개발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특허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